

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3. 6. 9.>

<p style="font-size: 1.2em; margin: 0;">제 호</p> <p style="font-size: 1.2em; margin: 0;">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</p> <p style="margin: 5px 0;">신청인과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기재하고, 자동차 소유자가 서명해야 합니다.</p>			
신 청 인	성 명(명 칭)		주 민(사 업 자) 등 록 번 호
	주 소	(전화번호:)	
자 동 차	등 록 번 호		
	차 종		용 도
재발급사항 <input type="checkbox"/> 앞번호판 <input type="checkbox"/> 뒤번호판 <input type="checkbox"/> 앞·뒤번호판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봉인			
재발급사유 <input type="checkbox"/> 훼손 <input type="checkbox"/> 갱신	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구 비 서 류	신청인 제출서류		시·도지사 확인사항
	1.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(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) 2. 자동차등록증		1.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2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,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 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
※ 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청	처리기간	즉 시
수수료	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		
○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10조제3항). -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4조제4항제3호).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)